

인천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93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박성홍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박동식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선응

변론 종결 2019. 10. 23.

판결 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19,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2.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27. 9:30경부터 19:00경까지 D 직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 금융감독원 조사팀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원고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연루되었으니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원고의 E은행, F은행 계좌번호, 출금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2. 27. 원고의 휴대전화기에 원격 조정 어플을 설치하도록한 후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14:03경 G에서 약관대출 3,000만원, 14:57경 H카드에서 카드론대출 700만 원, 16:52경 I카드에서 카드론대출 1,200만원 합계 4,9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E은행 J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으로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빙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좌에서 송금자를 'K'으로 변경하여 피고 B의 L은행 M 예금계좌(이하 'B의 L은행 계좌'라 한다)로 같은 날 14:22:23 2,000만 원, 같은 날 14:47:40 1,000만 원을, 피고 C의 N조합 O 예금계좌(이하 'C의 N조합 계좌'라 한다, B의 L은행계좌와 통틀어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라 한다)로 같은 날 17:02:46 나머지 1,900만 원을 각 계좌이체(이하 '이 사건 각 계좌이체'이라 한다)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항의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2019. 2. 27. 인천남동경찰서에 전자금융사기 신고를 하였고 2019. 2. 28. E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이체에 사용된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에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계좌이체금이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K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 받아 위 금액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K으로부터 순금 150돈을 담보로 받고 K에게 각 돈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각 계좌이체금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는 K의 피고들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피고들의 금전취득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계좌이체금이 피고들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된 것인지여부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8, 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대전 중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19. 2. 26. K으로부터 순금 팔찌 및 목걸이 150돈을 담보로 받고 K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9. 5.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9. 2. 27. 14:22 이 사건 계좌에서 B의 L은행 계좌로 'K' 명의로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 B은 K으로부터 대여요청을 다시 받아 2019. 2. 27. 같은 담보로 K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9. 5. 2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같은 날 14:37이 사건 계좌에서 B의 L은행 계좌로 'K' 명의로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② 피고

C은 대전 동구 R, 2층에서 'S'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19. 2. 27.K으로부터 순금 팔찌 및 목걸이 150돈을 담보로 받고 K에게 1,900만 원을 변제기2019. 8. 26.,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9. 2. 27. 17:02 이 사건 계좌에 서 C의 N조합 계좌로 'K' 명의로 1,9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K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들은 권한 없이 원고의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이를 K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좌에 송금하였다고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K 사이의 각 대부계약은 이 사건 각 계좌이체금을 상거래로 변제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각 계좌이체금이 송금될 당시 피고들에게 그것이 편취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좌이체금이 'K' 명의로 송금될 당시 피고들이 그것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들이 전당포 영업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용이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뒤의 불법행위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이 사건 각 계좌이체금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과는 그 평면을 달리하므로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이체금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송금받아 금전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송금 당시 그 금전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전당포 영업을 하는 자들로서 K과의 대부계약 당시 고가의 순금을 가져와 수천만 원을 현금 대출하는 것은 전당포에서 이례적인 경우로서 장물 등 범죄 개연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K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제6조의2 제1항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은 '거래상대방이 29세를 초과하고 70세 미만의 개인인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거래를 할 때 미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K과의 대부계약 체결시 K으로부터 미리 위와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받고, 중요 사항에 관하여 K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K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인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9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16호증, 을가 제15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K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대부업법에서 요구하는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의 미징구, 중요 사항에 대한 K의 자필 기재를 받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K 등의 사기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들이 K와 각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들에게 K 등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대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신원 확인 주의의무 및 대부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며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를 알려줌으로써 그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대부계약 체결 당시 대부계약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알려준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전당포업자에게 전당물의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장물을 취급하기 쉽기 때문이고, 또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차주로 내세운 사람과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함으로써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부업법의 각 규정들은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부업자의 횡포를 막고 변제능력을 감안한 건전한 대출과 건전한 소비를 위해 과잉대출을 막아 종국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대부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킨다면, 이는 전당포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을 넘어서게 된다.

③ 피고들이 K와 각 대부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피고들이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K에게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를 알려준 행위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망 수단이 된 바 없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의 신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다.

④ 원고는 피고들이 피고들의 각 예금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들을 사기방조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